

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기 관 명 : 온사랑 주간보호센터 설 치 일 자 : 2024.05.01
급여 종류 : 재가급여 (주야간보호센터) 기 관 장 : 허 진 행
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97, 403호, 404호, 정원 : 42명

서비스 계약: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인정 등급을 받은 1~6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계약체결을 한다.

계약 기간: 계약일로부터 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

계약의 중지 및 해지: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 정보를 한 대상자는 계약 해제한다.

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계약 해제한다.

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됐을 때 계약 해제한다.

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계약 해제한다.

서비스 제공자 의무:

가. 수급자의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
나.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.

다. 표준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.

신원 인수인의 의무

가. 월 이용료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
나. 보호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한다.

다. 수급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받기 전 본인(수급자)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

신원 인수인의 권리: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계 약 서 류: 1) 장기요양인정서 2)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) 복지용구급여확인서

이용비용 및 비용 부담, 변경

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① 월이용료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재가급여 월한도액	2,512,900원	2,331,200원	1,528,200원	1,409,700원	1,208,900원	676,320원

본인부담금 내역	경감	0 %
		6 %
		9 %
		15 %

분류번호	분 류		금액(원)
라-1	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	41,820
		장기요양 2등급	38,720
		장기요양 3등급	35,740
		장기요양 4등급	34,120
		장기요양 5등급	32,490
		인지지원등급	32,490
라-2	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	56,060
		장기요양 2등급	51,930
		장기요양 3등급	47,940
		장기요양 4등급	46,300
		장기요양 5등급	44,650
		인지지원등급	44,650
라-3	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	장기요양 1등급	69,730
		장기요양 2등급	64,590
		장기요양 3등급	59,640
		장기요양 4등급	58,010
		장기요양 5등급	56,360
		인지지원등급	56,360
라-4	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	장기요양 1등급	76,820
		장기요양 2등급	71,160
		장기요양 3등급	65,750
		장기요양 4등급	64,090
		장기요양 5등급	62,460
		인지지원등급	56,360
라-5	13시간 초과	장기요양 1등급	82,370
		장기요양 2등급	76,310
		장기요양 3등급	70,500
		장기요양 4등급	68,860
		장기요양 5등급	67,240
		인지지원등급	56,360

② 본인부담금

- 일 반 이 용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: 무료
- 의료급여수급권자, 소득,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: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%,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%

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(주간보호) 식사비는 1식 3,900원, 간식비(1일) 1,500원으로 계산하여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. 1일 식, 간식 제공 횟수는 식사 2회(점심, 저녁), 간식 2회로 산정한다.

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은 매년 공단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

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식·간식비의 경우 매년 식자재비 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고지 후 적용한다.

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
-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
-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

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

서비스 계약시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(이용자)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① 기관은 업무 중 수급자의 상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, 등 종사인력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②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-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.

③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-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.
- 기타 이 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.

④ 수급자(이용자)는 센터와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⑤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